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자금의 융자 지원 등〉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67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0.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18조의4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 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 는 기업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민간의 자본과 첨단기술 역량의 발전으로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는데 있어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민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그 기여도에 따른 성과 분배를 받거나,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 기술료를 납부하고 기술이전을 받는 방법이 있음.

개정안은 이 중 민간의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성과를 보유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 등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주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술이전은 총 3건밖에 되지 않고, 그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금의 융자 등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을 우려가 있음.

<우주 분야 기술 이전 사례(2020년~2024년)>

성과소유기관	해당 연구개발사업	실시권자	계약 금액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알** 주식회사	165,000,000원
연세대학교원주산 학협력단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주)***바이오	5,000,000원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우주기초분야	(주)***티제이	5,000,000원

자료 : 우주항공청

또한 우주 분야의 기술이전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술이전 건수와 규모의 증가가 아닌 특정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또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36